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5. . .

의결 사항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[안]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의자	김근한 의원 외 8명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. . .

발 의 자 : 김근한·김민성·김재우
김낙관·김춘남·양진오
장미경·강승수·소진혁
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2. 내 용

가. 구성인원: 13명(위원장 1명, 간사 1명, 위원 11명)

나. 존속기간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: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나.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□ 「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예비비 지출 승인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